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건설업 방역 지침

※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본 지침보다 엄격한 기준의 행정명령이 있는 경우 해당 행정명령을 따라야 함

1. 예방체계 마련 및 유연근무 휴가 활용

- 방역관리자 지정, 사업장 방역지침 마련 및 노동자 안내·교육, 의심 환자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방역 **협력체계** (보건소 담당자 등) **구축**
- 시차출퇴근제, **유연근무** 및 **휴가** 등 **활용** 권고, 이로 인한 불이익 없도록 조치

2. 회의, 모임, 회식, 출장 등 조치

- **외부인 방문** 시 사업장 상황에 맞게 사무실 외에서 **응대**
- **출장 자제, 회의** 및 워크숍, **교육,** 연수, **조회(TBM)** 등은 **온라인** (또는 영상) 실시, 불가피하게 **대면**으로 **실시 할 경우 방역수칙*** **준수** 및 **소규모**로 실시

  * 발열 확인, 마스크 착용, 손소독제 비치 및 참석자 간 충분한 거리 유지, 유증상자 참석 금지
- 회식 등 **비필수적인 모임**은 가급적 자제하고(2단계부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), 퇴근 후 **일찍 귀가**하는 **문화 형성**

3. 의심증상 모니터링 및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

- 동일 장소(부서) 등에 **2~3명 이상**의 **유증상자**가 **3~4일 내 발생 시** 유증상자가 **코로나19 검사**를 받도록 **안내**하고, 추가 발생 시 **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 신고**
- **증상 있는 노동자**는 휴가, 휴업 등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, 근무 중 증상 시(발열, 기침 등) 즉시 퇴근 조치
- **매일**(1.5단계 부터 1일 2회 이상) 비접촉식 체온계, 열화상카메라 등으로 **증상 여부 확인**

4. 작업장·구내식당·휴게실 관리

- **노동자 간 간격을 2m(최소 1m) 이상 유지**, 어려운 경우 **작업대** 등의 **위치, 방향 조정**
- **구내식당**(함바 식당 등)은 **투명 가림막 설치** 또는 가급적 일렬 또는 지그재그 앉기, **개인 간 거리 유지, 공용 집게·접시·수저 등** 사용 전·후 **손소독제**(또는 비닐장갑) **사용**
- 식사 시간, 휴게시간 **시차 운영**
- **휴게시설** 등은 **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고,** 이용 시 **마스크 착용, 대화 자제**

5. 소독 및 위생·청결 등 관리

- **작업공간** 충분히 **환기**(매일 2회 이상) 및 **주기적 소독,** 손 소속제 비치, 마스크 및 위생용품 지급·비치 또는 구입 지원, 공용물품(매일 2회 이상) 소독
- 안전화, 안전모, 작업복 등 **청결 유지 및 소독**, 손 씻기 및 기침 예절 준수
- **실내 전체 및 밀집도가 높은 실외**에서는 **상시 마스크 착용**
- 신체접촉(악수, 포옹 등) 및 **침방울 튀는 행위**(구호 외치기 등) **자제**(2단계부터 금지)

6. 코로나 예방에 소요되는 시설·장비·물품 등에 소요되는 비용관리

- 코로나 예방을 위한 직접적인 조치에 해당하는 시설·장비·물품 등*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

  * 손소독제, 마스크, 체온계, 안전교육장 및 구내식당 내 가림막, 코로나 진단비용(사업주 부담분에 한함), 현장 방역 및 소독 비용 등

고용노동부　　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